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5175858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9.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4. 체결된 12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을 18,954,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54,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8. 8.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16,000,000원을 이율 연 15.3%,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8. 9.부터 2023. 8. 9.까지, 보험가입금액 16,000,000원으로 정하여 C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9. 3. 10.부터 D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D은 2019. 6. 28.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4,907,248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7. 11. D에 14,907,248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20328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7. 'C은 원고에게 14,980,760원 및 그 중 14,907,248원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22. 5. 4. C에게 송달되었고, 2022. 5. 18. 확정되었다.

#### 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와 C은 1986.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8. 9. 7. 대구가정법원에서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18. 10.부터 C이 퇴직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8. 10. 4.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8년 증서 제32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C)는 2018. 10. 4. 채권자(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  
음.

아 래

채무금: 120,000,000원

채무종류: 위자료

변제기한 2028. 9. 10.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방법: 2018. 10. 10.부터 매월 10일 일백만 원씩 2028. 9. 10.까지 분할 상환

제2조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금 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  
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3조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  
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7460호로 C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C이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10. 30. F에, 2018. 11. 16. C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18. 11. 9.부터 2020. 3. 10.까지 F로부터 C의 임금 중 22,571,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F에 대한 임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 2019. 7. 11.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무렵 모든 사실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D에 2019. 7. 11.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또한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4,907,24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인 2018. 10. 4.경에는 아직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C은 F에 대한 임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D에 대한 채무 외에도 기업은행, H은행, I은행, J카드, K카드, L카드에 대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 C이 그로부터 5개월 정도 후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 원고가 D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또한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F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은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점, 피고는 C에 대하여 이혼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조서에는 C이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C과 피고는 그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8. 10. 25. 1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점,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F로부터 2018. 11. 9.부터 2020. 3. 10.까지 22,571,000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자력상태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F에 대한 임금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실질에 있어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한편,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2. 6. 20. 기준 18,954,5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F로부터 합계 22,571,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인 18,954,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54,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유리